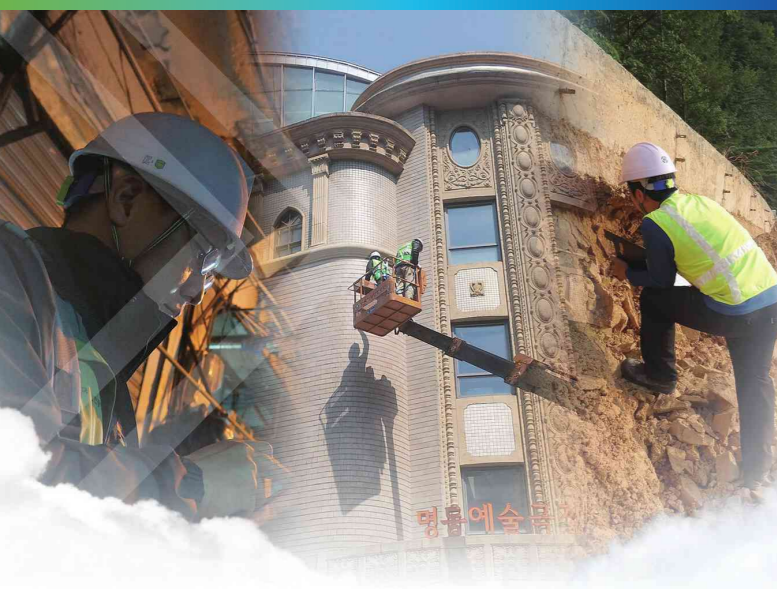


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 대상
제3종시설물
안전 및 유지관리절차 안내



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(FMS)
<https://www.fms.or.kr>

시스템 문의: 1588-8788

시설물안전법 대상 제3종시설물

■ 제3종시설물이란 무엇인가요?

■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 외에 안전관리가 필요한 소규모 시설물로서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」(이하, 법) 제8조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지정·고시된 시설물을 말합니다.

■ 제3종시설물 지정(해제) 절차(지정기관)



* 실태조사매뉴얼: [FMS]-[이용안내]-[자료실]-'3종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매뉴얼' 참고
※ 관리주체의 시설물 유지관리절차는 뒷면 참고

■ 제3종 시설물의 범위

1. 토목분야 : 준공 후 10년이 경과된 시설물(마목은 제외한다)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

구분	대 상 범 위
가. 교 량	1)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 100미터 미만인 도로교량 2) 「도로법」 제10조에 따른 도로 외의 도로에 설치된 연장 20미터 이상인 교량 3) 연장 100미터 미만인 철도교량
나. 터 널	1) 연장 300미터 미만의 지방도, 시도, 군도 및 구도의 터널 2) 「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터널 3) 연장 100미터 미만인 지하차도 4)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터널로서 특별시 및 광역시 외의 지역에 있는 철도터널
다. 육 교	보도육교
라. 옹 벽	1)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100미터 이상인 옹벽 2)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부분이 포함된 연장 40미터 이상인 복합식 옹벽
마. 그 밖의 시설물	그 밖에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교량·터널·항만·댐 등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

2. 건축분야 : 준공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물(다목은 제외한다)로서 다음 구분에 따른 시설물

구분	대 상 범 위
가. 공 주 동 택	1) 5층 이상 15층 이하인 아파트 2)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4층 이하인 연립주택 3)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인 기숙사
나. 공 동 주 택 외의 건축물	1) 11층 이상 16층 미만 또는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(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및 자원순환 관련 시설은 제외한다) 2)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 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, 의료시설, 교육연구시설(연구소는 제외한다)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숙박 시설, 위락시설, 관광 휴게시설, 장례시설 3)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문화 및 집회 시설(공연장 및 집회장만 해당한다), 종교시설 및 운동시설 4)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위락시설 및 관광휴게시설 5)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공공업무시설(외국공관은 제외한다) 6) 연면적 5천제곱미터 미만인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
다. 그 밖의 시설물	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재난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물

비고
1. 교량의 "연장"이란 교량 양측 교대의 흉벽 사이를 교량 중심선에 따라 측정된 거리를 말한다.
2. 터널 및 지하차도의 "연장"이란 각 본체 구간과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구간을 포함한 거리를 말한다.
3. 위 표 제1호라목2)에서 "복합식 옹벽"이란 재료형식이 2가지 이상인 옹벽을 말한다.
4. 위 표 제2호의 시설물에는 그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, 건축설비, 소방설비, 승강기 설비 및 전기설비는 포함하지 않는다.
5. 건축물의 "연면적"은 부대시설 및 지하층을 포함한 동별로 계산하고, 2층 이상의 건축물이 하나의 구조로 연결된 경우에는 연면적의 합계로 계산하며, 위 표 제2호나목2)부터 4)까지의 규정에서 연면적을 계산할 때 2개 이상의 용도가 하나의 건축물에 같이 있는 경우 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로 계산한다.
6. 건축물의 층수에는 필로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로 된 층을 포함한다.
7. 위 표 제2호나목에서 "공동주택 외의 건축물"은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에서 정한 용도별 분류를 따른다.
8. 건축물 중 주상복합건축물은 "공동주택 외의 건축물"로 본다.

■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이 모두 지정되나요?

■ 모두 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. 지정기관이 제3종시설물의 범위에서 해당하는 소관 시설에 대하여 안전등급, 위험도, 시설물의 경과년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안전관리가 필요한 시설물을 제3종시설물로 지정·고시합니다.
※ 법 제8조 참고

제3종시설물의 안전점검

■ 제3종시설물은 어떤 점검을 수행하나요?

■ 법 제11조 및 「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」(이하, 영) 제8조에 따라 제3종시설물은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■ 영 별표3 따른 정기안전점검의 실시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.

안전등급	A·B·C 등급	D·E 등급
정기안전점검	반기에 1회 이상	1년에 3회* 이상

* 해빙기 전(2·3월), 우기 전(5·6월), 동절기 전(11·12월)

■ 단, 필요시 정밀안전점검, 긴급안전점검,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■ 정기안전점검은 누가 수행하나요?

■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관리주체의 소속직원이 있는 경우 직접 정기안전점검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.

■ 영 제9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을 책임기술자라 합니다.

구분	기술자격 요건	교육요건
정기 안전점검	·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토목, 건축 또는 안전관리(건설안전) 직무분야의 초급 기술자 이상일 것 · 건축사	·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분야(토목, 건축 분야)의 정기안전점검교육을 이수하였을 것

※ '20.8.21 이후 안전점검등을 수행하려는 경우 FMS에 등록된 기술자 일 것

■ 단, 공동주택의 정기안전점검은 「공동주택관리법」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 같은 가능합니다.

■ 점검가능한 기술자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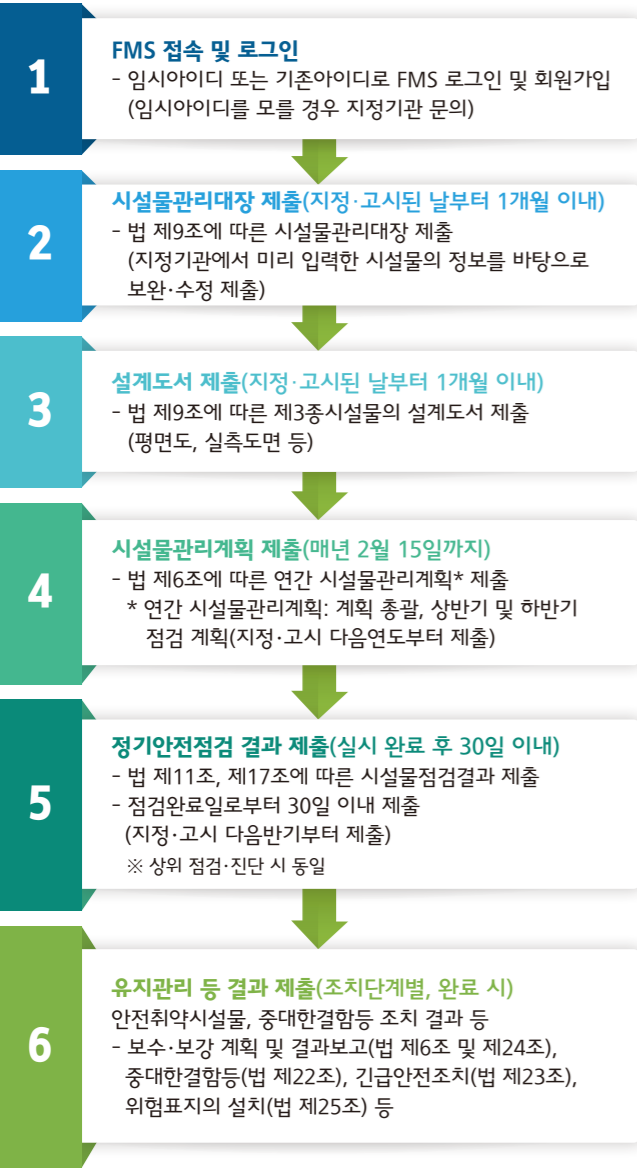
■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소속직원이 없는 경우 대행업체를 통해 점검을 수행하여야 합니다.

■ 법 제26조에 따라 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을 한국시설안전공단, 안전진단전문기관* 또는 유지관리업체**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* 안전진단전문기관: 법 제28조에 따라 등록된 기관
** 유지관리업체: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유지관리업자
※ 안전진단전문기관/유지관리업체는 [FMS]-[관련업체]에서 검색 가능

제3종시설물의 관리주체는 무엇을 해야 하나요?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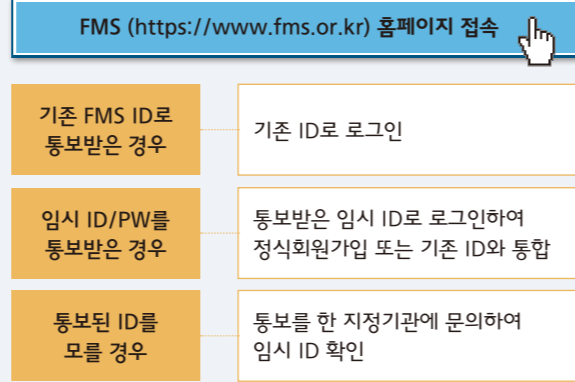
■ 지정기관으로부터 지정통보(공문) 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부터 안내문을 받은 관리주체는 아래절차에 따라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합니다.



※ 점검 가능한 기술자가 없는 경우 대행업체를 통해 수행해야 함
※ 자세한 사항은 각 항목의 번호로 확인 가능

1 FMS 접속 및 로그인

■ 지정기관(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)으로부터 제3종시설물 지정통보·고시된 경우 지정기관에서 입력한 제3종시설물의 정보를 FMS ID로 이관 받아야 합니다.



※ 지정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(임시)아이디가 아닌 경우 제3종시설물관리대상 등록이 불가합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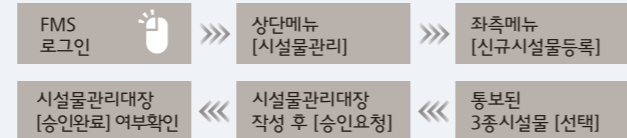
2 시설물관리대상 제출 (FMS 시설물 등록)

의무사항 제3종시설물로 지정·고시된 경우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

관련법령 법 제9조,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등

제출시기 제3종시설물로 지정·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

제출방법



※ 신규시설물 등록에 제3종시설물이 뜨지않는 경우 콜센터로 문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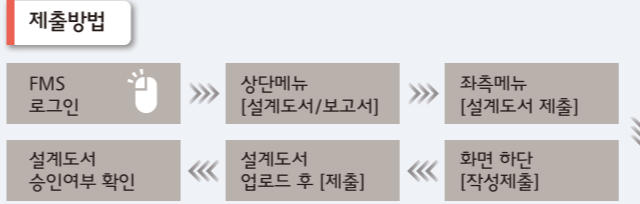
3 설계도서(평면도, 실측도면 등) 제출

의무사항 제3종시설물로 지정·고시된 경우 관리주체는 설계도서(평면도 등)를 FMS를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.
※ 자료분실 등으로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을 작성하여 FMS에 제출

관련법령 법 제9조, 영 제6조 및 규칙 제6조 등

제출시기 제3종시설물로 지정·고시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
※ 실측도면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실측도면 작성에 소요되는 기산은 산입하지 않음

제출형식 Tiff 표준형식(CCITT Group4), PDF(PDF/A-1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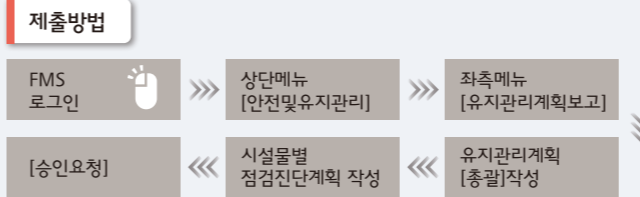
4 시설물관리계획 제출

의무사항 기본계획*에 따라 소관시설물에 대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(시설물관리계획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합니다
※ 연 단위 시설물관리계획 수립(총괄, 상·하반기 점검 계획)

관련법령 법 제6조, 영 제3조 및 규칙 제3조 등

제출시기 매년 2월 15일까지
※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연도부터 제출

제출방법



* 기본계획: 국토교통부장관이 시설물이 안전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립·시행하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계획

5 정기안전점검 결과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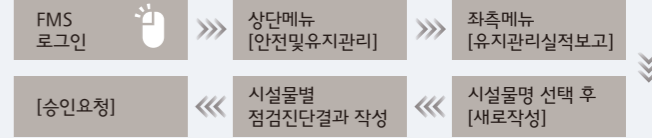
의무사항 소관 시설물의 안전과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3종시설물의 경우 정기적으로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합니다.

관련법령 법 제11조 및 제17조, 영 제8조 및 제13조 등

실시시기 반기 1회, 안전취약시설물(D·E 등급)은 매년 3회

제출시기 점검을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FMS를 통해 제출
※ 제3종시설물로 지정된 다음반기부터 실시

제출방법



6 유지관리 등 결과 제출

유지관리의 결과보고

의무사항 구조안전과 관련된 보수·보강을 시행한 경우 완료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결과보고서를FMS를 통해 제출

관련법령 법 제41조, 영 제29조

중대한결함등 사후관리 보고

의무사항 중대한결함등*이 발생한 경우 사용제한, 위험표지 설치 및 주민공지 등 조치를 취하고 2년 이내 보수·보강 등 조치착수, 착수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이를 완료하여 FMS를 통해 결과 제출
* 중대한결함등
①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결함
② 공중이 이용하는 부위에 결함

관련법령 법 제22조~제25조, 영 제18조~제20조 등

안전취약시설물 관리 보고

의무사항 점검결과 긴급한 보수·보강이 필요하거나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제한, 위험표지판 설치 등 조치를 취하고 FMS를 통해 결과 제출

관련법령 법 제16조, 제23조~제25조 등